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6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사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3. 전북신용보증재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12. 28. 접수 제264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장진영

별지